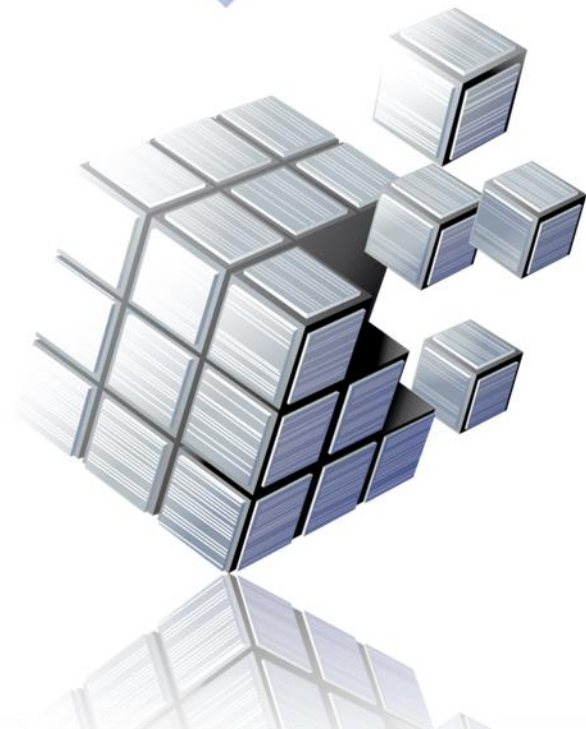




INNOPOLIS
DAEGU

2018년

대구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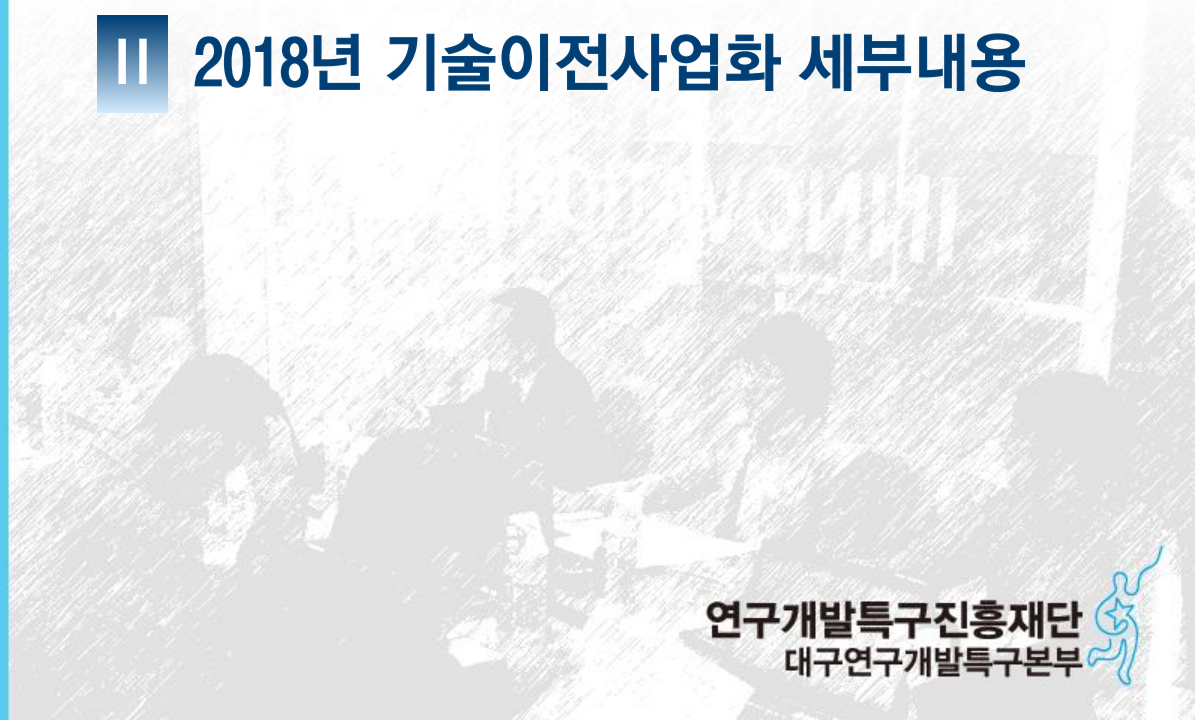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





I 대구특구 현황 및 사업개요

II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 세부내용





대구연구개발특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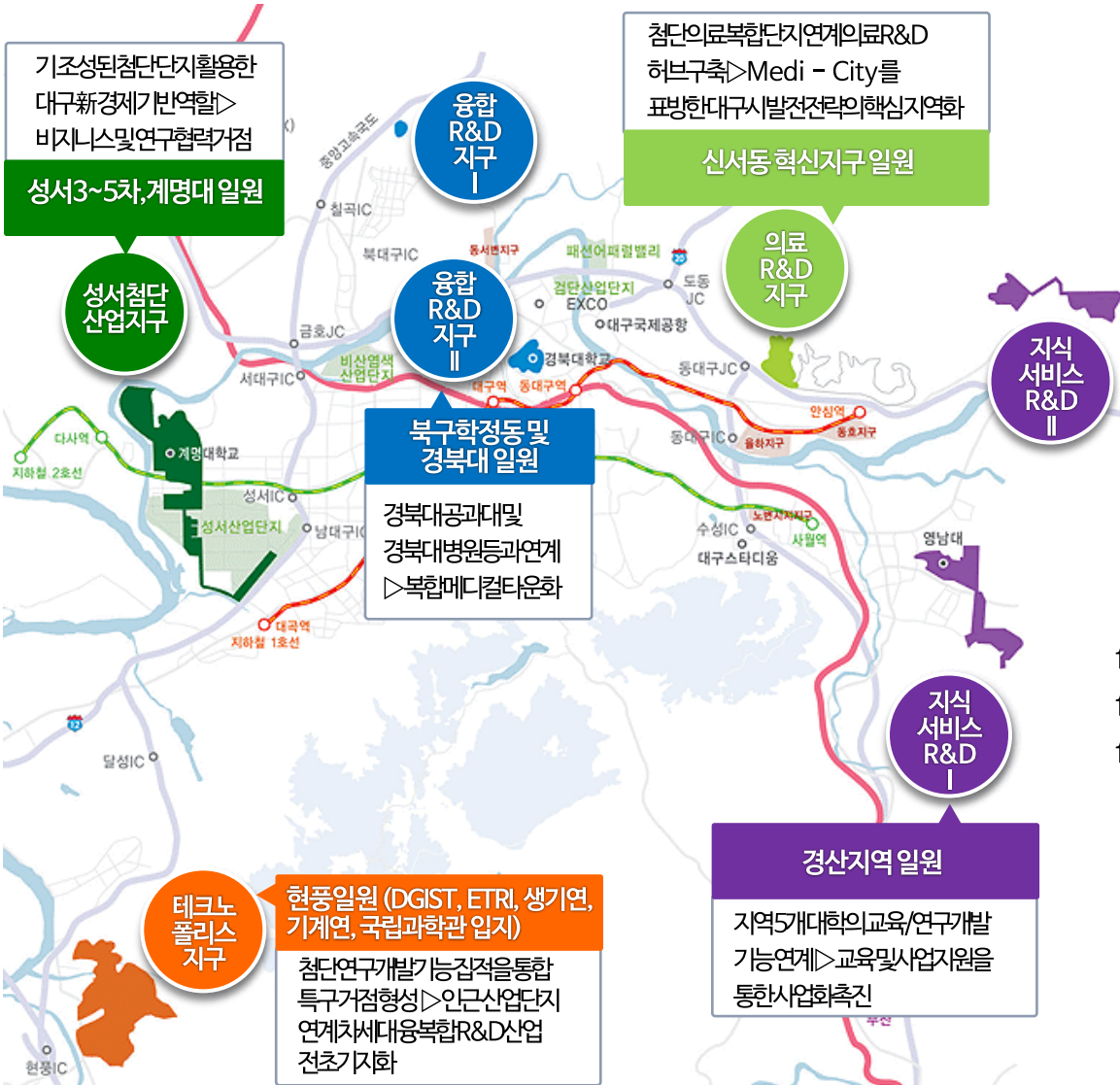
I. 현황 및 사업개요



1 대구연구개발특구 소개 및 범위

지구별 위치도

• 총 7개구 지구 (22.253 k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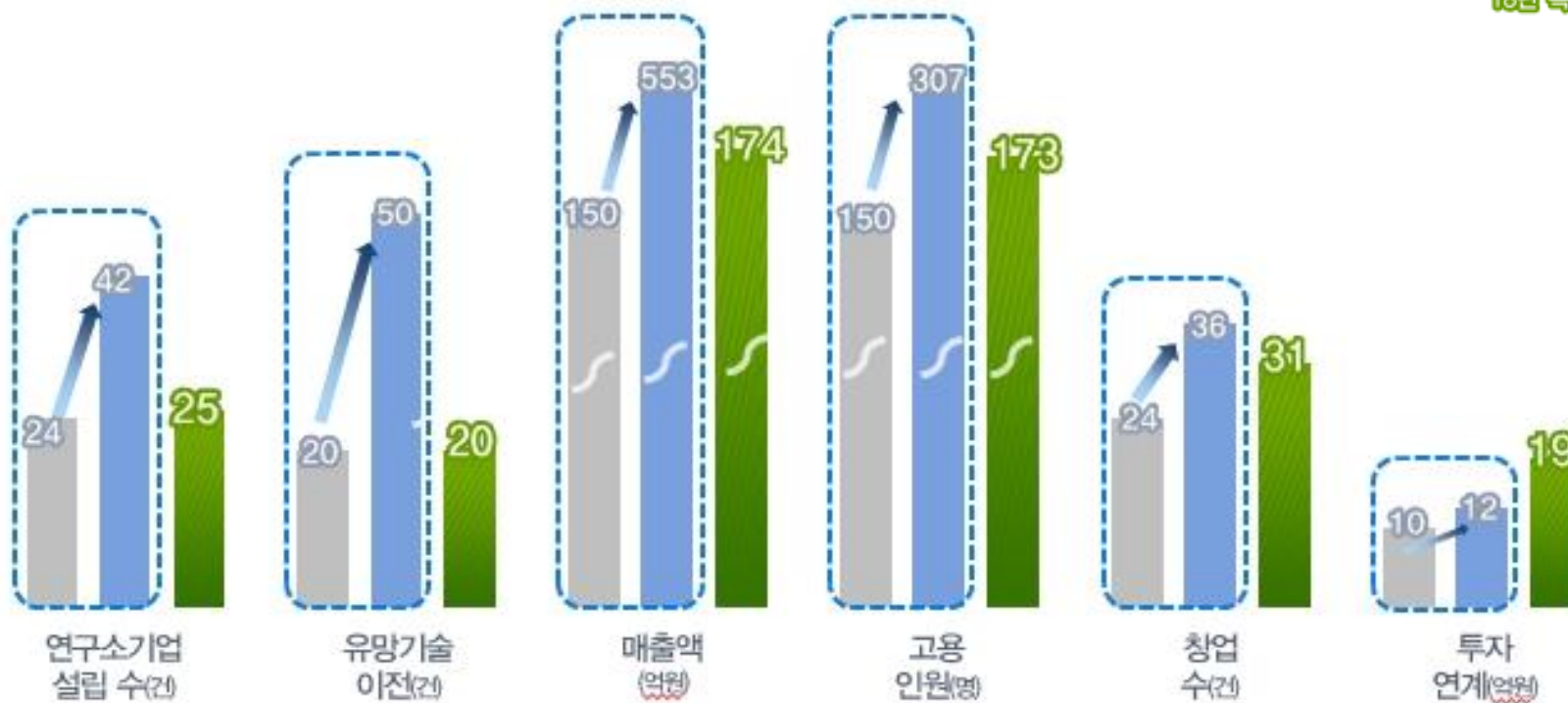


02 2017년 성과 및 2018년도 목표

연구소기업 42개사 설립

매출액 553억원 달성

신규고용 307명 달성



“대경권 기술사업화 거점 도약”



대구특구육성사업 추진을 통해
“사업화 전주기 선순환 생태계” 구축·운영

수요자 중심



수요자 중심의
수요-공급 기술연계
플랫폼 구축

생태계 구축



기술이 필요한 곳으로
흘러가 꽃을 피우도록
기술사업화
생태계 조성

플랫폼 기능강화



다양한 혁신주체의
자산 및 네트워크를
연결하는 통합
플랫폼 구축

4 2018년도 대구특구육성사업 예산



1.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7,905백만원

1-1. 기술발굴 및 연계 1,000백만원

-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600백만원
- 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200백만원
- R&BD연계 기술찾기 200백만원

1-2. 기술이전사업화 6,905백만원

- 기술이전사업화 6,905백만원

※ 신규과제 예산 2,833백만원

기술이전R&BD(1차 공고) 800백만원
연구소기업R&BD(1차 공고) 800백만원



2. 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지원 2,218백만원

2-1. 연구소기업성장 488백만원

-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488백만원

2-2. 창업 및 특화 1,730백만원

- 이노캠퍼스-엑셀러레이팅 1,100백만원
- 특화분야 기술역량강화 380백만원

* 사업관리 250백만원

“ 2018년 대구특구육성사업 총 사업 예산 10,123백만원 ”

5 제2차 사업공고(신규사업 기준)

사업명	지원 대상	지원규모	지원 내용
연구소기업 발굴 기획	기술사업화전문기관등	600백만원	출자수요발굴 및기술매칭, 연구소기업 설립지원등
R&BD연계 기술찾기	기술사업화전문기관등	200백만원	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양방향 발굴 체계 구축, BM제작기반 기술 마케팅 등
혁신주체 네트워크	특구내산학연관	200백만원	특구 혁신주체 대상기능별혁신기술분야별 네트워크구성및운영
투자연계형 R&BD	신규(현금투자)+공공기술 이전받은 특구내기업	1,233백만원 (과제당 200백만원이내)	상용화기술개발, 시작품제작, 신뢰성평가및인증, 마케팅등기술사업화지원
기술창업지원 (이노캠퍼스-엑셀러레이팅)	대구특구소재대학과 엑셀러레이터 컨소시엄	300백만원	창업아이템발굴 검증, 공백기술매칭, 투자멘토링등 기술창업성장전방위지원
연구소기업 성장지원	대구특구 연구소기업	488백만원 (건당 30백만원 내외)	분야별 (시제품, 멘토링 등) 패키지 성장지원

☞ 2차 사업 공고는 예산규모 및 지원내용은 추후 변경 되어질 수 있음



2018년도

Ⅱ. 기술이전사업화

세부내용



1 기술이전사업화사업(1차 공고)

목 적

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

지원대상

(주관기관)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경권 기업 (컨소시엄 가능)

※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전년도대비 차이점

AS-IS

- 기술이전R&BD : 1년(연2억), 2년(연4억), 3년(10억)
- 연구소기업 R&BD : 최대 2년(연 3억원 이내)
- 투자연계형 R&BD : 최대 2억원(연구소기업 제외)

TO-BE

- 기술이전 R&BD : 1단계(연2억), 2단계(연3억) 이원화
- 연구소기업 R&BD : 1단계(연2억), 2단계(연3억) 이원화
- 투자연계형 R&BD : 최대 2억원(연구소기업 허용)

지원규모

- 총 1,600백만원
- 지원분야 : 기술이전R&BD, 연구소기업 R&BD 부문

구분	지원내용	
	1단계 사업(2018년도)	2단계 사업
지원규모	1년 / 2억원 이내	1년 / 3억원 이내
지원기간	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	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
세부내용	- 1단계 및 2단계 과제 추진내용 구분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기획에 따라 조정 가능 - 18년도는 1단계 사업만 지원 예정이며, 향후 2단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1단계 사업 과제 신청 시 2단계 사업 요약계획을 제출해야 함 - 1단계 및 2단계 과제는 동일한 제품(기술)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함 - 1단계 과제와 2단계 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 - 1단계목표미달성과제는 2단계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되며, 성과가 우수한과제를 선별하여 2단계지원	

1 기술이전사업화사업(1차 공고)

신청자격

 **기술이전R&BD** ▶ **주관기관** :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은 대구·경북 소재 기업
참여기관 : 기업, 대학, 출연연, 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가능

*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 증빙 필요,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 되어야 함.

 **연구소기업R&BD** ▶ **연구소기업** :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

* 대구특구로 연구소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예비 연구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사업협약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

지원내용

●● 이전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●●

지원분야

대구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활용,
대구특구 입주기업에서 사업화

A형

대구특구내
공공연구기관



대구특구내
기업

대구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활용,
대구특구 외부기업(대구·경북 지역)에서 사업화

C형

대구특구내
공공연구기관



특구외부기업

타특구(대덕·광주·부산·전북) 내 공공연구기관 기술활용,
대구특구 입주기업에서 사업화

B-1형

타특구내
공공연구기관



대구특구내기업

연구개발특구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활용,
대구특구 입주기업에서 사업화

B-2형

특구외부
공공연구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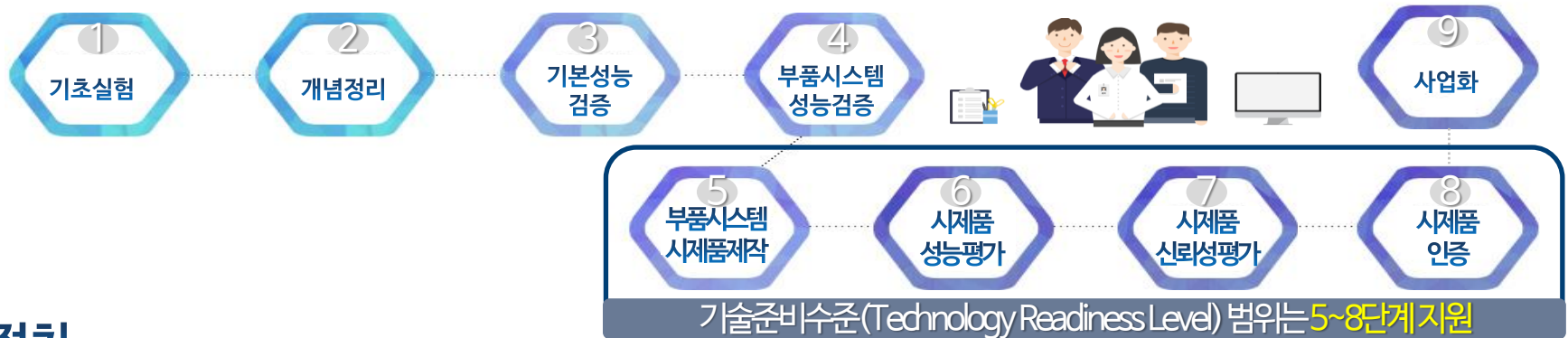


대구특구내기업

1 기술이전사업화사업(1차 공고)

▶4대 특화분야로 한정◀

1 스마트 IT	차세대 모바일, 스마트 디스플레이, 지식서비스 SW 등
2 의료용 기기·소재	진단·헬스케어 기기, 치료·재활복지 기기, 의료용 소재·부품 등
3 그린에너지	태양광, 연료전지, LED, 그린카 등
4 메카트로닉스	지능형 자동차, 지능형 로봇, 생산기반 시스템 등



절차



* 2018년도는 1단계 과제만 지원 예정이며, 2단계 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1단계 사업 과제 신청 시 2단계 사업 요약계획 제출

* 2단계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은 1단계 사업 지원기업 대상으로 세부 안내 예정

1 기술이전사업화사업(1차 공고)

주요우대사항(기술이전 R&BD에 한함) : 총 3점 한도

연구개발특구 추천기술 - 추천기술 리스트 및 소개자료

3점

첨단기술기업

3점

대구특구기업이 대구특구내 기술* 또는 他특구 지역**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

2점
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은 대구특구 기술로 인정

** 대덕, 광주, 부산, 전북특구

※ 기타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



관련 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
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

신청 방법

● 사업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,
대구특구본부(dg.innopolis.or.kr)

● 접수기간

2018년 2월27(화) ~ 2018년 3월29일(목), 16:00

● 접수처(우편 및 방문접수)

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 11길62대구융합R&D센터 1131호





가심사농심사다.



· 연구소기업이란?

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”

관련법률 ▶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

설립주체 ▶ 공공연구기관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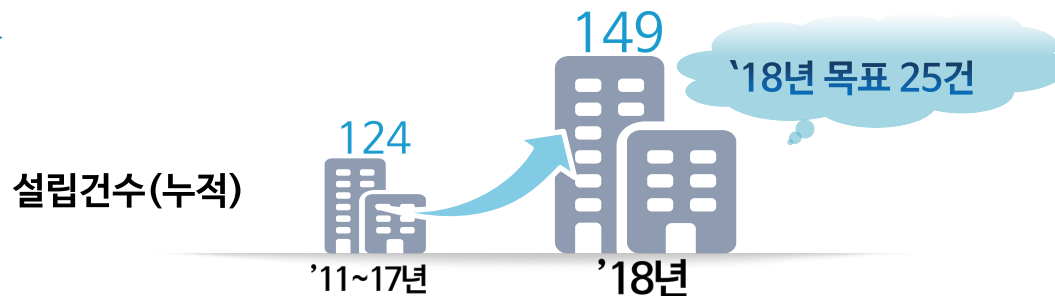
설립요건 ▶

-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 20% 이상 보유
-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
- 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안에 설립 할 것

세제지원 ▶

- 법인세/소득세 :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- 지방세 : 85% 감면

설립현황 ▶



· 첨단기술기업이란?

특구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“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 기업”

- 관련법률** ▶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
- 설립주체** ▶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(첨단기술기업 설립요건 참조)
- 설립요건** ▶
 - 특구에 입주한 기업 (특구내 1년이 상 입주한 기업)
 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·제품보유 및 생산 (특허권 보유)
 -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 30% 이상
 -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% 이상
- 세제지원** ▶
 - 법인세/소득세 :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 - 지방세 : 85% 감면

설립현황 ▶

